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18461호, 2021. 9. 24. 공포, 2022. 3. 25. 시행)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,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과목 이수 인정,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,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2조의3)
- 나. 교육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및 업무 등을 정하고,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(안 제92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의3 및 제9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2조의3(고등학교의 학점제)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과목 이수 인정,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,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제92조의4(고교학점제 지원센터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한국교육과정평가원
2. 한국직업능력연구원
3. 한국교육개발원
4. 그 밖에 교육정책을 연구·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

②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교학점제 기초·정책연구
2.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료의 연구·개발

3.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·개발 및 연수 실시
 4.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- ④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-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2조의3(고등학교의 학점제) 고</u> <u>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</u> <u>은 교과목 이수 인정, 졸업에 필</u> <u>요한 학점 수, 그 밖에 고교학점</u> <u>제 운영 및 졸업 등에 관하여</u> <u>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 제23조</u> <u>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</u> <u>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92조의4(고교학점제 지원센터)</u> <u>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</u> <u>호의 기관에 고교학점제 지원센</u> <u>터를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1. 한국교육과정평가원</u> <u>2. 한국직업능력연구원</u> <u>3. 한국교육개발원</u> <u>4. 그 밖에 교육정책을 연구·</u> <u>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</u> <u>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</u> <u>수행한다.</u> <u>1. 고교학점제 기초·정책연구</u> <u>2.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을</u>

위한 자료의 연구·개발

3.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원 연
수자료의 연구·개발 및 연수
실시

4.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
지원을 위한 업무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고교학점제 지
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④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고
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
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
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행정
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3 - 6894